

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2012. 3. 7.(수)	
		작성	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장춘재/강석원 사무관 김홍준/박현경 (Tel. 721-5722)
2012년 3월 7일(수) 16:00부터 사용바랍니다.		배포	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(T. 2100-2106)

## 국가지재위, 특허소송 및 산학연협력연구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

### - ‘지재권 분쟁해결제도’, ‘산학연협력연구 협약’ 특별전문위 출범 -

- 대통령 소속 「국가지식재산위원회」(공동위원장 : 국무총리·민간위원장 윤종용)는 지식재산 관련 兩大 특별전문위원회\*를 발족시키고 김황식 총리 주재로 위원장 위촉식(3.8(목))을 가진다.
  - \* ①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, ②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위
  - 특위 위원은 산업계, 과학기술계, 학계, 연구계, 과학기술계, 변호사·변리사 등 관련 분야의 명망있고 객관적·중립적인 전문가(명단 별첨)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.
- ‘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’는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 및 아직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·중견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,
  - 특허소송 관할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, 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 등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.
- 한편, ‘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위’는 협력연구의 성과물(특허 등 지식재산권)에 대한 소유권 및 수익 배분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기업·대학·연구소 간 협력 R&D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,
  - 협력연구 성과 귀속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도모한다.

- 이와 관련, 김황식 총리는 “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식재산 정책 현안 해결에 착수한 만큼, 어렵더라도 철저히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하고,
  - “兩大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이 경험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”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###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

(※ 아래 내용은 본 특위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브리핑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- ‘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’는 3.7(수)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의 목표와 지향원칙\* 및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.

\* ① (특허소송 관할집중)

- 소송당사자(특히 중소기업) 등 국민의 편익 최우선
-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제고
-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 도모

② (소송대리 전문성 강화)

- 소송당사자(특히 중소기업) 등 국민의 편익 최우선
-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제고
- 소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·기술 전문성의 균형과 조화

- 동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광형 KAIST 석좌교수는 “2012년 국가 R&D로 16조원을 투입하지만 지적권 보호가 제대로 안되면 ‘밑 빠진 독에 물 붓기’가 될 것”이라며 특위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
  - 직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소송 당사자, 특히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송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위원들 역시, 특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집단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,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.
-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애플-삼성간 소송 등 국내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, 속칭 ‘특허괴물’로 불리우는 특허전문관리회사(NPE)의 국내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기업 대상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- 그러나, 우리의 특허분쟁 해결제도는 특허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특허에 대한 판단이 상반될 우려가 있고,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,
  - 쟁점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특허·기술 전문가의 소송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.
- ‘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’는 관련 부처와 산업계, 학계, 과학기술계, 발명계, 법조계, 변리사계 등 분야를 대표하는 총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,
  - 연말까지 ‘특허소송 관할집중’과 ‘소송대리 전문성 강화’의 두 가지 Agenda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.
  -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안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, 연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·의결될 예정이다.

##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

- 지식집약적 고도기술의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융합 추세가 강화되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초·원천·핵심 기술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,
    - 산학연 협력연구는 시장수요와 산업현장 실무, 이론적 지식과 선진 연구 기법 등의 융합 시너지를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이 가능하다.
  - 그러나, 그간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, 창출된 사업 이익의 분배 등 계약조건에 대한 상호간의 현저한 시각차가 기업·대학·연구소 간 협력연구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.
    - 이로 인해,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협력연구의 비중이 연평균 약 20%씩 증가\*하고 있는 반면, 기업-대학, 기업-연구소 등 순수한 사적계약에 의한 협력연구\*\*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- \*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연구 증가률[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]  
(’06) 17.1% → (’07) 8.4 % → (’08) 15.5% → (’09) 39.65% → (’10) 17.2%
- \*\* 산학공동연구 비중[지경부,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(안)]  
(’06) → 21% → (’07) 16% → (’08) 6%
- 주요 선진국의 경우, Bayh-Dole법(미국), 산업활력재생법(일본), Lambert Agreement(영국) 등을 마련하여 산학연협력연구에 대한 공정한 계약 모델을 제시함으로써,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왔다.
    - 우리 정부도 지난 ’09~’10년에 걸쳐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문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였으나,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.

- 이에,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,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계기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이 가능한 협력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,
  - 우리나라 R&D의 양적·질적 성장을 촉진하고, 합리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게 되었다.
  - 금번 구성된 ‘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위’는 이화여대 박영일 교수(前 과학기술부 차관)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인의 산업계, 학계, 연구계,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.
- 동 특위는 금년 중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 체결시 기업, 대학, 연구소가 상호 준거(mutual reference)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계약서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,
  - 공정한 산학연협력 연구·개발 문화를 확산하고, 연구실험실(Research Lab)과 시장(Market) 사이의 간극을 줄여 협력연구의 개방형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  - 동 특위는 오는 3.13(화)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상정·의결할 계획이다.

**참고 1**

**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장 이력**

**I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(총10인)**

구분	성명	現직위/학력	주요 경력	
위원장 (1인)	<b>이광형</b> (195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</li> <li>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</li> <li>서울대 산업공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전문위원</li> <li>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장</li> </ul>	
민 간 (6인)	학계 (1인)	<b>정상조</b> (195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대 법과대학 교수</li> <li>서울대 법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, 기반전문위원</li> <li>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</li> </ul>
	전문가 (1인)	<b>백강진</b> (196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고등법원 판사</li> <li>서울대 법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</li> <li>서울지법, 대전지법 판사, 수원·창원지법 부장판사 등</li> </ul>
	발명계 (1인)	<b>김흥기</b> (196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식센터 대표</li> <li>연세대 생명공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</li> <li>한국발명진흥회 비상근이사</li> </ul>
	변호사 (1인)	<b>권영모</b> (195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무법인광장 IP팀 파트너 변호사</li> <li>서울대 화학공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nderson Kill &amp; Olick 변호사</li> <li>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(AIPPI KOREA) 부회장</li> </ul>
	변리사 (1인)	<b>김성기</b> (195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</li> <li>서울대 화학교육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한변리사회 부회장</li> <li>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(AIPPI KOREA) 회장</li> </ul>
	산업 (1인)	<b>황철주</b> (195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벤처기업협회 회장</li> <li>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</li> <li>인하대 전자공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</li> <li>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</li> </ul>
정 부 (3인)	지재위 (1인)	<b>박성준</b> (196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</li> <li>고려대 법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, 국제출원과장 등</li> </ul>
	법무부 (1인)	<b>박근범</b> (196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무부 법무심의관</li> <li>고려대 법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법연수원 교수, 법무부 법무과장 등</li> </ul>
	특허청 (1인)	<b>이영대</b> (196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</li> <li>서울대 정치학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허청 고객서비스국국장,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등</li> </ul>

## 이광형 위원장

	성명	이광형 (李光炯) KWANG HYUNG LEE	생년월일	1954.11.15.(58세)	출생지	전북	
	소속	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		직위	석좌교수		
	학 력						
	기 간		학교(전공) 및 학위				
	1971. ~ 1973.		서울사대부고				
	1974. ~ 1978.		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				
	1978. ~ 1980.		KAIST 산업공학 석사				
	1981. ~ 1982.		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(INSA) 컴퓨터 석사				
1982. ~ 1985.		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(INSA) 컴퓨터 박사					
1988.		프랑스리옹제1대학교대학원 전산학 박사					

경 력 사 항	
기 간	학교(전공) 및 학위
1980. . ~ 1981. .	아주대 조교
1985. . ~	KAIST 조교수
1985. . ~	KAIST 공학부 전산학과 부교수
1995. . ~ 1996. .	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 초빙교수
1985. . ~	KAIST 학제학부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
1999. . ~	[現] 미래산업 사외이사
1999. . ~	일본 동경공대 초빙교수
2001.06. ~	KAIST 국제협력처 처장
2004.08. ~ 2006.08.	KAIST 학제학부장
2005.01. ~	[現] 중국 칭화대 과학기술논문지 편집위원
2006. .	[現] (주)테스텍 사외이사
2006.08.	KAIST 교무처 처장
2008. .	[現]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자문위원
2011. .	[現]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겸 정책조정전문위원장
2000. .	[現]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

II

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(총15인)

구분	성명	現직위/학력	주요 경력	
위원장 (1인)	<b>박영일</b> (1958)	◦ 이대 디지털미디어부 교수 ◦ KAIST 박사(산업경영학)	◦ 제23대 과학기술부 차관 ◦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	
민  간 (9인)	산업계 (2인)	<b>이동근</b> (1960)	◦ 삼성전자(주) IP전략팀 기획그룹장 ◦ KAIST 석사	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◦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IP전략팀
		<b>최근수</b> (1957)	◦ (주)딜리 대표이사 ◦ 동국대 박사(전기공학)	◦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장협의회 부회장 ◦ 대한전기학회 사업이사
	학 계 (2인)	<b>김화중</b> (1953)	◦ 경북대 산학협력단 단장 ◦ 도교공업대 박사(건축구조·재료)	◦ 경북대 건축공학전공 교수 ◦ US Energy Technologies INC 기술고문
		<b>강성구</b> (1964)	◦ 호서대 산학협력단 단장 ◦ 서울대 박사(화학)	◦ 호서대 화학공학과 교수 ◦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
	연구계 (2인)	<b>신정혁</b> (1969)	◦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경영실장 ◦ 서울대 석사(물리학)	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창출전문위원 ◦ 윤의섭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
		<b>하성도</b> (1961)	◦ KIST 기술사업본부장 ◦ M.I.T. 박사(기계공학)	◦ KIST 나노시스템연구단장 ◦ KIST 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장
	변호사 (1인)	<b>조원희</b> (1970)	◦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◦ 텍사스대 Law School	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◦ 문화콘텐츠진흥원 ◦ 국제거래 자문변호사
	변리사 (1인)	<b>이준성</b> (1969)	◦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◦ KAIST 박사(재료공학)	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◦ 특허청 사무관
	지재 위원 (1인)	<b>박재근</b> (1959)	◦ 한양대 전자통신공학부 교수 ◦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박사(재료공학)	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분위원 ◦ 삼성전자 반도체소재기술그룹 부장
정  부  (5인)	지재위 (1인)	<b>이상진</b> (1962)	◦ 지재위 지식재산정책관 ◦ 동경도립대 석사(정치학)	◦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, 인사과장 ◦ 주일본국대사관 1등서기관
	지경부 (1인)	<b>정양호</b> (1960)	◦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◦ 서던일리노이대 박사(경제학)	◦ 지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국장 ◦ 국경위 투자촉진팀장 팀장
	교과부 (1인)	<b>최은옥</b> (1965)	◦ 교과부 산학협력관 ◦ 위스컨신대 석사(교육공학)	◦ 교과부 친서민정책추진단 단장 ◦ 교과부 기획담당관
	특허청 (1인)	<b>이영대</b> (1964)	◦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◦ 서울대 학사(정치학)	◦ 특허청 고객센터국,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장, 기획조정관
	국과위 (1인)	<b>박구선</b> (1960)	◦ 국과위 성과평가국장 ◦ 대전대 박사(기술경영학)	◦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◦ 한·중과학기술협력센터 북경 소장

## 박영일 위원장

	성명	박영일 (朴永逸) YOUNG-IL PARK	생년월일	1958.10.9.(54세)	출생지	서울	
	소속	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	직위	교수			
	<b>학 력</b>						
	기 간	학교(전공) 및 학위					
	~ 1976.	경북고등학교					
	~ 1980.	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					
	~ 1982.	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					
~ 1984.	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						
~ 1986.	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학 박사						

경 력 사 항	
기 간	학교(전공) 및 학위
1979. .	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
1980.05. ~ 1984.05.	총무처, 정무장관실
1998.03. ~ 1998.08.	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
1998.08. ~ 1999.06.	과학기술부 연구기획평가심의관실 연구기획평가심의관
1999.06. ~	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
1999.06. ~ 2001.07.	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기획조정심의관
2001.08. ~ 2002.02.	과학기술부 공보관
2002.03. ~ 2002.04.	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, 연구개발국 국장
2002.04. ~ 2002.12.	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, 기획관리실, 정책홍보관리실 실장
2003.01. ~ 2003.08.	제23대 과학기술부 차관
2003.08. ~ 2006.01.	[現]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
2006.02. ~ 2007.07.	이화여대 R&D(연구개발)혁신단 단장
2007.08. ~ . .	[現] 과학문화융합포럼 공동대표
2007.08. ~ . .	[現]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

## 참고 2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개요

### I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

#### 1. 추진배경

-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 간 지식 재산을 둘러싼 국내외 법적분쟁이 급격히 확산
- 선진국들은 효율적이고 전문성 높은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 소송 등의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

- 일 본('05) : 1심 집중(동경, 오사카), 항소심 집중(지식재산고등재판소)
- 미 국('82) : 항소심을 CAFC(연방순회항소법원)으로 집중
- 프랑스('09) : 1심을 파리지법, 항소심을 파리고법으로 집중

- 우리나라에서도 '소송 관할 집중, 변리사 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' 등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, 이해관계자의 현저한 시각차로 인해 합의안 도출이 난망

- 특허소송 관할 집중을 위한 「법원조직법」 개정안(박병석 의원) 16대, 17대 국회 각각 발의 및 회기만료로 폐기
- 변리사 공동대리 도입을 위한 「변리사법」 개정안(최철국 의원) 17대 국회 발의 및 회기만료로 폐기

- 그러나 지재권 보호의 궁극적 보루인 특허 소송 등의 선진화가 없이는 안정적 지식재산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곤란

-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 소송체계를 재검토 하고 소송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

#### 2. 현황 및 문제점

- (특허소송 관할제도) 특허관련 소송체계는 특허무효여부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특허침해여부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
- 이에 따라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

- 특허무효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특허침해 여부 판단시 소송처리가 지연
  - ※ ‘김벌리클라크(美)’ vs. ‘쌍용제지’의 특허침해소송 : 11년 8개월 소요
-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
  - ※ 지재권 침해소송 총 청구 건수 184건('10) 중 서울중앙지법이 153건이며 기타 지방법원은 1~2건에 불과하여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

□ (소송대리 전문성) 변리사는 「변리사법」 제8조\*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권을 요구하나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 제87조\*\*에 따라 대리권 불인정

\* 「변리사법」 제8조(소송대리인이 될 자격) : 변리사는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.

\*\* 「민사소송법」 제87조(소송대리인의 자격) :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.

- 특허 침해여부 판단에는 특허법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이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,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 진술의 법률상 효력이 불인정

< 특허소송 현황 >



□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

- (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) 관련 당사자 모두 관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, 세부 개선안에 대한 상호간 입장 차이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

<특허 침해소송 관련 관할개선(안) 비교>

	특허청	대법원
1심	서울중앙지법·대전지법에서 통합관할	선택적 관할로 서울중앙지법 추가
2심	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	현행 유지 (1심 직근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관할)

※ 특허침해소송 2심법원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「법원조직법」 개정안 (서병수 위원) 법사위 계류 중

- (소송대리 전문성 강화) 변리사계에서는 기술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의 침해소송 (공동) 대리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
  - 법조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사건으로 판단의 대상이 기술적 문제일 뿐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라는 입장이어서 합의도출이 곤란
    - ※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·변호사 공동대리 제도 도입을 위한 「변리사법」 개정안 (이종혁 의원) 법사위 계류 중
- ⇒ 따라서 관할제도, 소송대리를 포함한 분쟁해결 제도의 효율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(feasible) 개선방안을 연구·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 필요
  - 행정부, 전문가, 산업계, 과학기술계 및 관련 업계(변호사·변리사)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심층 논의 필요

### 3. 목적 및 기능

- (목적) 특허소송 관할 제도 등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문성·효율성 높은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 마련
- (기능) 특허소송 관할제도 및 변리사 공동대리 등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·효율성 확보 방안 논의
  - 폭 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쟁점 도출
  - 국내외 관련제도의 도입 배경,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정책적 적용가능성 검토
  - 이해관계자간 협의 및 이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
  - 기 논의되어 온 사안을 포함하여 소송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다각적이고, 실현가능한 개선 대안 도출

## 4. 위원 구성

- (구 성) 관계 부처 및 민간 관계자로 구성(10명이내)하되,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
  - (위원장)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
  - (위원)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
    - 정부 : 법무부, 특허청, 지식재산전략기획단(간사)
    - 민간 : 산업계, 학계·전문가, 과학기술계, 발명계, 변호사, 변리사
- (임기) 특별전문위원회 존속기한까지 활동

## 5. 위원회 운영

- 운영 개요
  - (회의시기)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  - (존속기한) 위원 위촉 시부터 8개월('12. 2월~9월)
    - ※ 계속 운영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 연장
  - (참석범위) 특별전문위원 외에도 상정안건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 참석
- 운영 방향
  - (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) 의견수렴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
  - (해외사례 조사) 해외 주요국 사례에 대한 공동 조사
    - ※ 필요시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책 대안 연구 및 제도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

- (개선안 마련)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, 구성원 (기관)간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 도출
- (개선안 추진방안 마련) 개선안에 대한 입법절차·방법 등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및 추진(필요시 공청회 개최)

## 6. 향후 계획

일정	세부 내용	비고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계 부처 및 전문가, 이해당사자로 특별전문위 구성</li> <li>◦ 구성운영 및 향후일정 논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활동기간 및 횟수, 목표, 활동내역(해외사례확인, 연구용역,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) 논의</li> </ul> </li> <li>◦ 산업계,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도출</li> <li>◦ 해외 사례 조사(필요시 정책연구) 대상 논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문조사 대상·범위, 해외 사례 조사 대상·범위 논의</li> </ul> </li> </ul>	필요시 연구용역 설문조사 수행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실조사, 이해관계자 의견 종합정리 및 논의</li> </ul>	설문조사 결과 논의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조정안 마련</li> </ul>	해외 사례 조사 결과 논의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개선안 마련 도출 (해외사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)</li> </ul>	
7~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개선안 초안 마련</li> </ul>	개선안 확정 후 필요시 공청회 실시

## 1. 추진배경

- 산학연협력연구 성과의 소유권 및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 시각차는 협력 연구·개발 활성화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
  - 지재위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R&D의 양적·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간 협력연구 협약제도의 개선을 모색함으로써
  - 공정한 산학연협력 연구·개발 문화를 확산하고, 연구·실험실(Research Lab)과 시장(Market) 사이의 간극을 줄여 산학연협력연구를 기초·원천·핵심 기술 등 강한 지재권 창출의 장(場)으로 승화

## 2. 현황 및 문제점

### □ 추진경과

- 지경부, “산·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T/F팀\*” 구성·운영('09.9~)
  - \* 지경부, 대학(산학협력단장 협의회), 기업(산업기술진흥협회), 연구기관(Knowledge Works, 법무법인 태평양)
- 지경부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(총리실)에 협약 가이드라인 보고('10.5.6, 5.18, 6.1, 7.15) 후,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('10.7.22)
  - 학계·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최종(안)을 작성('10.8.26, 10.13) 하였으나, 대학측의 권리강화 요구, 강행 규정적 성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최종 합의도출 무산('10.11.3)

### □ 문제점

- (대표성 문제) 산업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학계는 산학협력단장 협의회를 통해 의견 개진 및 협의에 참여하였으나, 협의과정에서 참석자의 대표성 및 일관성 확보가 미흡

- (관계부처 역할) 교과부, 지경부가 기업 및 대학의 현저한 시각차를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계 노정
- (공감대 부족) 양자간 협력연구시 상호 공생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부족하고, 비교 열세에 있는 군소대학, 중소기업 등에서의 협력연구 참여확대를 위한 배려가 결여되어,
  - 실제 가능한 것 보다 낮은 수준(low-level)\*의 협력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
    - \*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공동연구 비중은 21%('06)→16%('07)→6%('08)로 감소 추세('10년, 지경부 산·학공동연구 합리화를 위한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(안))
- (산연협약 문제) 산학협력연구 논의과정에서 산연협력연구역시, 지적권 소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대두
  - 지적권 소유 분쟁 등으로 연구소가 핵심 지적권의 창출을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

### 3. 목적 및 기능

#### □ 목 적

- (공정한 협력) 관련 부처· 이해관계자의 관점 및 합리적 요구사항을 재수렴하여 공정하고 수용가능한 연구·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
- (지식재산 강화) 기업·대학·연구소 간 개방형혁신 연구 생태계 촉진 및 공생발전 도모를 통해 산학연협력연구가 국가지식재산 전략 핵심 축의 하나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논의
- (가이드라인)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시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주요 항목들에 대한 협약의 틀(framework)과 기준(criteria)을 담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·보급하여,
  - 협력연구의 양적·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상호간 Win-Win은 물론, 우리나라 R&D 성과 전반의 향상 및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

## □ 기 능

- (가이드라인)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 협상 시 기업, 대학, 연구소가 상호 준거(mutual reference)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계약서 마련
  - i) 협약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든 계약조건 항목을 도출
  - ii)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 제시
  - iii) 협력연구 계약의 국내외 모범 및 성공사례 제시
  - iv) 비교 열세인 군소대학,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 반영
- (보급규범) 사적(계약) 자치의 원칙과 협력연구 활성화를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규범형태로 결정
- (활용방안)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기업, 대학, 연구소 간 R&D 계약에 적극적·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활용방안 수립

## 4. 위원 구성

- (구성)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는 전문가로 구성(15명이내)하되,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
  - (위원장)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
  - (위원) 관련 전문가, 관계부처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
    - 정 부 : 교육과학부, 지식경제부, 국가과학기술위원회, 특허청, 지식재산전략기획단(간사)
    - 산업계 :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
    - 학 계 : 선도대학 및 군소대학 산학협력단장 등
    - 연구계 : 출연연 관계자
    - 기 타 : 변호사 및 변리사 등
- (임기) 특별전문위원회 존속기한까지 활동

## 5. 위원회 운영

### □ 운영 개요

- (회의시기) 월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- (존속기한) 위원 위촉 시부터 10개월('12.3월~'13.1월)
  - ※ 계속 운영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 연장
- (참석범위) 특별전문위원 외에도 상정안건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 참석

### □ 운영 방향

- 용역기관 활용 등을 통해 국내외 자료·사례 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,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전문위원회 안건 사전 배포
- 산학연을 총괄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산학, 산연(학연, 산학연 포함) 등 주체별 협력연구를 개별적으로 논의하되, 시급성과 실현가능성(feasibility)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 Agenda를 선정하여 논의

## 6. 향후 계획

일정	세부 내용	비고
3월	◦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	
3~6월	◦ 관련부처, 대학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	정책연구용역,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조사·분석
7~10월	◦ 가이드라인(안)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	
11월	◦ 가이드라인(안) 확정, 지재위 상정·의결 및 발표	필요시 가이드라인 확정 및 발표시점 재조율